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6년 하남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하남시청
- 제조사·공급자 : 굿어스테이터(주)
- 물품공급·기술지원 : 데이터베이스(Oracle DBMS)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하남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데이터베이스(DBMS)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2,98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라이선스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분기 정기점검 4회 실시 및 기술서비스 8시간 지원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5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하 남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굿어스테이터(주)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6년 하남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하남시청
- 제조사·공급자 : (주)티맥스티베로
- 물품공급·기술지원 : 데이터베이스(Tibero DBMS)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하남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데이터베이스(DBMS)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5,930,2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 라이선스 유지관리 및 장애처리, 분기 정기점검 4회 실시 및 기술서비스 8시간 지원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5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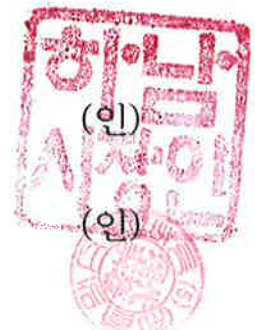
하 남 시 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티맥스티베로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6년 하남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하남시청
- 제조사·공급자 : (주)라임에스
- 물품공급·기술지원 : 교통정보시스템 S/W 1식(ITS통합운영, 통합상황판, 스마트교차로운영, 시설물관리, 교통정보제공 홈페이지 관련 API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하남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4,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5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하 남 시 청

제조사·공급사명

(주)라임에스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6년 하남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하남시청
- 제조사·공급자 : (주)서돌전자통신
- 물품공급·기술지원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S/W 1식 및 긴급차량우선신호 시스템(센터방식) S/W 1식(차량단말기 포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6년 하남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4,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자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5년 10월 일

발 주 기 관 명

하 남 시 청

제조사·공급사명

(주)서돌전자통신

